

제26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

2019. 4. 18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# **서울특별시 강서구 통·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**

2019년 4월 18일  
전문위원 정우숙

## **1. 회부경위**

- 가. 의안번호 : 2019 - 18
- 나. 제출자 : 송순효 의원 외 20명
- 다. 제출일자 : 2019년 4월 8일
- 라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6일

## **2. 개정이유**

고령화 시대에 맞춰 통장의 연령 제한을 상향하고 오피스텔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통장 모집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 하며,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」와 통합하고자 함

## **3. 주요내용**

- 가. 통·반의 조직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- 나. 통·반의 명칭 및 구역 (안 제3조)
- 다. 통장의 임기 (안 제4조)
- 라. 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(안 제5조)
- 마. 통·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(안 제6조 ~ 제7조)

- 바. 통·반장의 임무와 준수사항 (안 제8조 ~ 제9조)
- 사. 반상회 및 통·반장회의, 수당 및 사기진작 등 (안 제10조 ~ 제13조)
- 아. 통장신분증 발급 (안 제14조)
- 자.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(안 제15조 ~ 제23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5항 및 제8조 제1항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타
  - (1) 입법예고(2019. 4. 8. ~ 4. 15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취지

- 본 개정안은 □고령사회□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통장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 일부 지역에서 통장지원자가 없어 오랜 기간 공석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전부 개정을 통해 조례를 더욱 체계화, 구체화 하고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## 나. 주요 내용

### 1)[안 제4조] 통장의 임기

-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이 가능
-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추가연임 가능  
※ 기존의 65세 정년규정을 70세로 연장

### 2)[안 제5조] 통장심사위원회 관련 규정

- 통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심사 시 통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
- 비상설 기구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함
- 위원으로는
  - 동 행정자치팀장(당연직)
  - 주민자치(위원회) 위원, 직능단체장
  - 그 밖에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
-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회의 종료 시까지로 함

### 3)[안 제6조] 통·반장의 위촉

- 통장은 공개모집 후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
  -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, 오피스텔이 있는 지역의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관리인 포함
  - 해당 통에서 3년 이상 반장 경력자와 봉사활동 우수자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우대
- 반장은 동장이 위촉함

#### 4)[안 제7조] 통·반장의 위촉해제 사유

-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-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통·반 조직을 통합·폐지한 경우
- 법령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
  - ▶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·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경우
  - ▶ 심신장애, 질병, 해외출국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 - ▶ 사회적 물의, 민원 등으로 통·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
  - ▶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- ※ 일부 해촉사유의 경우(▶ 표시 조항)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

#### 5)[안 제12조~제13조] 통·반장 실비 수당 및 사기진작 등

-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, 반장에게는 상여 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
- 업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유공 통·반장을 대상으로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

#### 6)[안 제14조] 통장신분증 발급 관련 규정

- 통장 위촉 시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함

#### 7)[안 제15조~제23조] 통장자녀 장학금 관련 규정

- 기존의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」를 폐지하고 본 조례와 통합함
- ※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개정 내용 별첨 참고

## 다. 종합 의견

- 이번 통·반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, 6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,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, 통장심사 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, 위원회의 중립성 및 역할을 강화하였고
- □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□를 본 조례와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,
-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의수렴 등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의 임기 및 자격 등을 전부 개정하는 본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·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# 주요 개정내용

내용	기존 조례	개정안
통장 정년 (제4조)	65세	70세
연임규정 (제4조)	2회 연임 가능	2회 이상 공개모집 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추가연임 가능
위원회 명칭 (제5조)	통장추천심사위원회	통장심사위원회
통장심사위원회 (제5조)	추천심사	위촉 및 위촉해제 심사
위원회 위원장 (제5조)	동장	위원 중 호선 (동 행정자치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)
통장모집조건 확대, 통장심사 우대규정 (제6조)	-	오피스텔이 있는 지역의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관리인 포함 반장 3년 이상, 봉사활동 우수자, 3명이상 다자녀 통장심사 시 우대
통장 위촉해제 (제7조)	-	위촉해제 사유를 더 구체화 하고 일부 해촉사유는 통장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함
통장의 임무 (제8조)	-	임무를 더욱 구체화 하고 임무를 소홀히 할 경우 위촉해제 하도록 함
통장의 준수사항 (제9조)	-	개인정보 보호,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추가
사기진작 (제13조)	-	선진지 견학, 문화재 탐방, 산업시찰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추가
통장신분증 (제14조)	-	통장신분증 관련 규정 추가
통장자녀 장학금 (제15조~제23조)	별도 조례	통반 설치조례에 통합
부칙	-	통반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

## □ 지방자치법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8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